



노부호 / 환경처 해양보전과장



런던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I. 협약의 개요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1972년에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고, 국제해사기구(IMO)가 협약이행 사항을 관장

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영국 런던 소재 IMO 본부에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어오고 있는데, 지난 '93.11 월에는 제16차 당사국회의가 개최된바 있다.

협약의 정식 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이며, 일명 “런던덤핑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LDC)으로 약칭되고, 제15차 당사국 회의('92.11)에서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 '72; LC'72)으로 개명 되었다.

II. 협약의 성립배경

영국, 서독,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등 선진공업국가들은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1940년대부터 이를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해 왔으며, 특히 영국, 덴마크,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등 선진공업국에 의해 둘러쌓인 반 폐쇄성해역인 북해(North Sea)는 이를 국가에 의한 폐기물의 투기로 오염이 우려되어, 투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협정인 “오슬로 협약”(Oslo Dumping Convention, 1972)을 '72. 2 월에 채택하고, 오슬로협약을 모체로 '72.10.30부터 -11.13까지 영국런던에서 82개국 대표와 UN기구등이 참석, “런던덤핑협약”을 채택하였으며, '75. 8.30 협약 발효후 '75.12월 첫번째 협약당사국회의에서 IMO가 동 협약을 담당하도록 합의 하였다.

III. 우리나라의 협약가입 배경 및 가입국현황

우리나라는 『리우』 유엔환경개발 회이후 국제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92. 8.31 제1회 지구환경관계장관 회의 (위원장: 국무총리)시 『지구환경관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동 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하여, '93.12.21에 동 협약가입서를 영국정부에 기탁하여 협약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94. 1.20에 발효, 가입국이 됨으로써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런던협약에 현재 가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2개국이며, 우리나라 주변 국가중 일본은 '80년, 중국은 '85년 소련은 '76년에 가입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IV. 협약가입효과 및 의무사항

금번 협약가입으로 협약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협약개정시 우리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개진할 수 있게 되었고,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인접 국가간의 마찰 발생시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오염행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협약가입에 따라 별도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으나, 매년 폐기물의 해양투기 현황을 협약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협약을 미이행더라도 제재조치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나, 가입국으로서 협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다.

V. 협약의 주요내용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폐기물을 해양배출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투기가 가능한 폐기물도 각 당사국의 허가를 득한후 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 투기하여야 하며, 각 당사국은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당국(Authority)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중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그화합물, 카드뮴 및 그화합물, 원류와 그 폐기물, 정제된 석유제품, 석유증류 찌꺼기, 방사성 폐기물 또는 그 밖의 방사성물질('93.11

월 제16차 LC 당사국회의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금지하기로 협약을 개정), 어떠한 형태로든지(예를 들면 고체, 액체, 반액체, 기체 또는 살아있는 상태) 생화학전을 위해 생산된 물질은 해양투기가 금지(부속서1)된다. (다만, 이러한 물질을 미량 함유한 물질은 제외) 또한 비소·메릴룰·크롬·구리·납·나켈·바나듐·아연 및 그 화합물을 다양으로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유기실리콘 화합물, 시안화물, 불화물, 부속서 1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살충제 및 그 부산물은 당국의 특별허가(부속서2)를 받은 후 투기가 가능하고, 기타물질은 일반허가후 배출이 가능하다.

또한, 허가증 발급시 고려사항(부속서 3)으로 폐기물의 투기해역은 투기하려는 물질의 특성과 성분, 투기장소의 특성 및 투기방법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협약사무국의 임무, 협약개정요건, 협약가입 및 발효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VI. 규제사항

'93.11월 제16차 LC 당사국회의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결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였다.

첫째, 중전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왔으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였고,

둘째, 산업폐기물 및 하수오니의 해상소각을 금지도록 하였으며,

셋째, '96. 1.1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산업폐기물은 "제조 또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다만 준설물질, 하수오니, 생선가공폐기물, 선박 및 플랫폼, 비오염 불활성지질물질, 자연발생 비오염 유기물질은 제외토록 하였다.

※ 산업폐기물 중 예외물질의 구체적인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불활성 물질은 화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고상의 물질로서 주로 광산이나 기초물질분야에서 생산된 것으로 돌, 모래등과 같은 광산폐기물이나 철광석의 응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같은 것이며, 비오염유기물질은 음·식료품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수산폐기물등으로 예상된다.

VII. 국내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우리나라가 해양에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해양생태계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분뇨, 음식료품 제조폐수, 수산가공잔재물, 정화조오니등 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의 것이어서 금번 협약가입으로 인해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 규제강화를 위해 협약개정 작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제16차 LC당사국회의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키로 의결함에 따라 '96. 1. 1부터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와 폐산 및 폐알카리 등이 산업폐기물의 범주에 속하게 됨으로써 동 폐기물을 해양투기에 의존하던 기존의 산업체는 육상처리로의 전환이 불가피, 처리비용의 부담이 기증되게 되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

기물운반선 등록업체도 '96. 1. 1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해양투기물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관련 업체의 사업방침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VIII. 향후계획

국제적으로 '96. 1. 1부터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키로 결정된 바, 산업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의 개념과 현재 우리나라가 투기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분석하여 법제정비 방향을 정립하는 한편, 향후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감량화 또는 적정처리 방법개발등 사전에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